

2025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5회차 3교시

정답 및 해설

본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한국간호과학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영리적 사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YAKJUSA MEDICK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5회차 3교시 정답

1	④	2	④	3	①	4	①	5	⑤	6	②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③	12	③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⑤
21	④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⑤	27	④	28	③	29	⑤	30	⑤
31	④	32	③	33	④	34	④	35	④	36	④	37	①	38	③	39	①	40	③
41	①	42	①	43	③	44	⑤	45	④	46	①	47	③	48	④	49	④	50	②
51	③	52	③	53	①	54	⑤	55	②	56	⑤	57	④	58	④	59	④	60	④
61	①	62	①	63	①	64	①	65	②	66	①	67	④	68	②	69	①	70	④
71	④	72	③	73	⑤	74	④	75	⑤	76	②	77	⑤	78	①	79	③	80	③
81	④	82	③	83	①	84	③	85	④										

3교시: 간호관리학(1~35번) 해설

문1. [정답] ④

국제간호협의회의 기능은 전문직 간호실무 표준화 및 수준 향상, 간호규정에 의한 전문직 자율규제 강화, 간호사의 사회, 경제, 복지 향상, 간호사업의 국제적 통계 및 정보관리, 국제적인 정치, 경제, 의료 및 보건단체들과의 횡적 교류 등이 있다. ④는 WHO의 기능이다.

⑤ 세브란스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보구여관에서 선교계 간호 교육을 실시: 일제 강점기

문3. [정답] ①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윤리 상담 · 자문 제공: 병원윤리위원회는 환자 · 가족 · 의료진이 직면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케이스별 상담(consultation)과 자문(advice)을 수행한다.
-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진 및 직원의 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 워크숍, 자료 배포 등 교육 활동을 기획 · 실행한다.
- 윤리정책 평가 · 개선: 연명의료중단 등 주요 윤리 이슈에 대해 통계 분석,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 윤리지침 및 절차 검토 · 수립: 기관 내 윤리지침(예: DNR, 사전연명의료의향서)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 · 개정하여 전사적 정책에 반영한다.

임상실습 과정 및 학생 교육은 간호교육부서나 실습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며, 병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다.

문2. [정답] ④

간호성장기(1960~1979)에는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초급대학 전문학교 수준의 3년 과정 간호학교로 개편(1962년)되었으며 고졸 이상 입학하도록 개편되었다. 검정고시제도는 1949년 폐지되었다가 1951년 국민의료령제정에서 부활되었으며 1962년 완전 폐지되었다.

- ① 각 도의 자혜의원에서 간호교육을 실시: 일제 강점기
- ② '간호부 양성소' 제도를 폐지: 1946년 미군정기
- ③ 이화여자대학교에 4년제 학사학위과정이 처음으로 개설: 1955년 전쟁 복구기
- ④ 검정고시를 통해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완전 폐지: 1962년 한국간호 성장기



문4. [정답] ①

- ① 회복 가능성 우선 배정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최대의 생명 이익을 도출하려는 배분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부합 한다.
- ② 사회적 기여 우선 배정은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부양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
- ③ 나이 우선 배정은 연령 차별(ageism)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 ④ 환자 위치 우선 배정은 공정한 입원 순서를 보장하는 듯하지만, 중증도와 회복 가능성 같은 의학적 기준을 배제하여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
- ⑤ 무작위 추첨은 형식적 절차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충족 하지만, 실제로 생명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해 배분 정의와 상충될 수 있다.

문5. [정답] ⑤

비밀유지의 규칙(confidentiality)은 간호사는 환자의 모든 건강 정보가 환자-의료인원(circle of care)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병실 복도처럼 공공장소에서 환자의 민감 정보를 소리 내어 논의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문6. [정답] ②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화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규범을 내면화하며 발달시키는 과정인 간호전문직 사회화는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이며, 간호에 대한 공동의식을 발달시키고 전문직을 역동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사회화는 간호학생이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때 일어나며 두 번째 사회화는 졸업 후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사회화는 재사회화라고도 하며 신규간호사로 일하게 되는 과정과 간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부서로 옮길 때 등 평생 동안 일어나게 된다.

문7. [정답] 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4조에 언급되는 정상의 주의란 사회적 교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경우 보편적인 실무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8. [정답] ①

- 투입과정에는 인력(간호직원의 기술, 경험, 태도, 교육 및 훈련, 환자의 간호강도지표와 환자중증도 등), 물자(장비, 공급품, 테크놀로지), 자금, 건물설계(건물의 디자인, 크기), 정보, 시간 등의 자원이 포함된다.
- 전환과정은 관리과정(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과 관리지원기능(예: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및 갈등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 산출과정은 투입요소가 전환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과이다. 이는 간호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호의 질평가, 간호시간, 재원일수, 환자만족 및 간호직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률 등을 포함한다.

문9. [정답] ④

- 카츠(Katz)는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관리 기술을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실무적 기술은 관리자가 특정 분야의 업무를 감독,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방법 및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실무적 기술은 관리자가 항상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가 하위 직원을 지휘하고 업무를 조직·통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업무관련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먼저 경험하며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문10. [정답] ①

상황이론은 조직을 관리하는 유일한 조직구조나 조직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하위체계 사이의 일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황이론의 기본적인 원칙은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상황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가장 최상의 방법은 상황에 따른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조직환경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통제시스템을 선택해서 종업원들을 지도하고 동기부여해야 한다.

문11. [정답] ③

전략적 기획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 기획은 주로 최고관리층에 의해 개발되고 수행된다.
- 전략적 기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다룬다.
- 전략적 기획은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없고, 지침적이거나 포괄적인 행동 또는 용어로 표현된다.
- 전략적 기획은 전술적 기획에 의해 달성된다.

문 12. [정답] ③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대면(face to face)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집단회의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주요 목적은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증진하고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단이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된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는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문 13. [정답] 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약품, 재료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문 14. [정답] ④

서비스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무형성, 비분리성(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 이 중 동일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 제공 시기, 제공 장소 등에 따라 질이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질성이라고 한다.

문 15. [정답] ③

프로젝트 팀 팀장은 기능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 권한은 특정한 과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지시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문 16. [정답] ②

①, ③ 면접법이나 중요사건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② 작업기록법은 직무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나 메모사항을 가지고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관찰이 어려운 직무분석에 많이 활용된다. ④ 작업표본 방법은 직무성과가 외형적일 때 적용하기 쉽다. ⑤ 관찰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직무의 내부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설문지법은 설문지 개발과 검증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신뢰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문 17. [정답] ④

모듈간호 방법(modular nursing)은 2~3명의 간호인력이 팀을 이루어 간호단위의 특정한 구역에서 환자간호를 제공하며, 담당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모든 간호를 담당한다. 따라서 일차간호 방법과 같이 팀의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다른 팀에게 인계한다. 모듈간호 방법은 한 팀의 간호인력이 2~3명으로 적어서 간호계획 수립과 조정활동에 전문직 간호사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고, 팀원 간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여 환자 직접 간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문 18. [정답] ③

계획적 변화는 관리자와 부하직원 간의 목표설정, 동등한 권력 비율, 의도성에 의해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한 변화이다. 조직의 현 상태와 바라는 상태 간의 간격이 존재함을 인식할 때 계획적 변화가 일어난다.

문 19. [정답] ③

간호인력 모집방법에는 내부모집과 외부모집이 있다. 내부모집 방법에는 사내공모제도나 기술목록 또는 인력배치표 등이 있다. 외부모집 방법에는 광고, 인턴십 제도, 특별행사모집 등이 있다. 다음의 사례는 간호대학생 대상 인턴십 제도로 신규간호사 채용 전 병원 실무를 체험하게 하여 조직 적합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 20. [정답] ⑤

직무수행평가의 핵심목적은 조직구성원의 업무 수행 결과(성과) 및 태도, 능력을 평가하여 보상(급여, 승진, 인사이동 등)이나 교육, 지도, 조직 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특히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성과 기반의 공정한 처우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문 21. [정답] ④

성과급은 특히 개인 간 경쟁이 과도할 경우, 개인성과는 향상되는 반면에 협동과 조정이 필요한 집단 성과는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22. [정답] ⑤

자발적 이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이직을 통한 인력감축은 조직의 노동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저성과 직원 교체, 새로운 변화의 기회 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남은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숙련된 경력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환자간호의 질 저하, 이직에 따른 새로운 인력 교육과 투입 비용 증가, 조직분위기 저하 등의 역기능이 있다.

문 23. [정답] ①

신규간호사는 처음으로 무균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있다(낮은 역량). 그러나 교육전

담간호사와 함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내고자 하는 의지는 보통 이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합한 리더십은 지시형 리더십이다.

문24. [정답] 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거나 권력을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업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동기부여,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 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문25. [정답] ⑤

이 사례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 연결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이다. 이는 완전연결형(all-channel type)의 특징이다.

문26. [정답] ⑤

- ① 정보는 공유될수록 협력이 강화된다.
- ② 우선권을 주장하는 태도는 갈등을 유발하고 팀워크를 약화시킨다.
- ③ 일방적인 지시는 협업보다는 명령-복종 구조로 오해되기 쉬우며, 자율적 협력 유도에 부적절하다.
- ④ 협력을 위해서는 소통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분리된 태도는 오히려 협력을 저해한다.

문27. [정답] ④

③ 협력은 이상적 전략이지만 완전한 만족 또는 공동의 해결안이 제시되지 않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문28. [정답] ③

6시그마는 질향상 활동방법으로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경영기법이다.

문29. [정답] ⑤

4주기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의 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내용은 지표관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성과관리체계에 해당된다.

문30. [정답] ⑤

정확한 환자확인 방법은 확인과정에 환자를 참여시켜 개방형으로 묻는다. 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고 수술 부위 표시에 환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문31. [정답] ④

환자안전문화의 패러다임은 '비난과 수치'로부터 '시스템적 사고'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적이며 쳐별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교육과 학습이 시행되는 안전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주축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 경영진의 환자안전 라운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문32. [정답] ③

퇴원계획은 입원 시부터 계획하고 퇴원절차는 퇴원 예정 1~2일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예고를 하여 퇴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속적인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원 교육을 시킨다. 퇴원 교육내용에는 퇴원의 목적, 효과, 용량, 방법, 자가간호 지식과 기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절차와 날짜, 합병증 유무와 대책 등을 교육한다.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신청해주어 환자와 가족의 퇴원을 돋는다.

문33. [정답] ④

이 사례는 의사의 처방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으나, 비슷한 모양의 약약이 약국에서 잘못 조제된 경우이므로 조제오류에 해당된다.

문34. [정답] ④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이며, 간호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다. 비밀주의 대상자는 이동 시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공기격리병실은 불필요하다. 공기주의 대상자 치료 시, 의료진은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접촉주의 대상자 치료 시 의료진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웃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을 착용한다.

문35. [정답] ④

가능한 한글로 기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문을 사용한다.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의견이나 해석은 기록하지 않고 적합성을 위해 간호와 관련된 환자의 건강문제만 기록해야 한다. 수기인 경우, 기록 시 빈칸을 남기지 않으며 빈 공간은 선을 긋는다. EMR상 error 시 사유를 넣고 다시 정정할 수 있다.

3교시: 기본간호학(36~65번) 해설

문36. [정답] ④

- ① 정상적인 호기지속시간은 흡기지속시간보다 두 배 정도 길다.
- ② 느린호흡은 12회/분 미만인 호흡으로 뇌간장애와 약물 등으로 발생한다.
- ③ 호흡의 깊이가 정상적이면 흡기 시에 늑골이 위쪽으로 당겨져 올라간다.
- ④ 천명음(wheezing)은 분비물, 부종, 기관지협착 등의 병변 시들리는 짹짹거리는 호흡음이다.
- ⑤ 체인-스톡스(Cheyne-Stokes)호흡은 무호흡 주기에 이어 과다호흡 주기로 변화되며 교대로 나타나는 호흡을 의미한다.

문37. [정답] ①

벤츄리마스크는 고유량체계로 환자의 호흡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스크에 연결된 관에 구멍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농도조절 구멍이 항상 개방되어 있도록 한다. 이 구멍이 시트나 옷에 의해 막히면 정확한 산소농도가 전달되지 못한다.

반면, 저유량체계는 공급되는 산소유속이 환자의 최고 흡기유속보다 낮아서 산소는 실내 공기와 일정하지 않은 비율로 혼합된다. 저유량체계에서 폐로 운반되는 산소운반 비율은 개인의 호흡횟수, 일회 환기량, 환기양상 등에 의해 결정된다.

문38. [정답] ③

기관내관은 입 또는 코를 통해 성대 하부의 기관내로 삽입되는 관으로 급성호흡부전, 중추신경 억제, 후두경련, 상기도 폐쇄 시 기도유지를 위해 삽입한다.

문39. [정답] ①

코삽입관으로 7L/분의 산소를 공급하면 환자가 공기를 삼키거나 비인두점막에 자극을 주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문40. [정답] ③

전유동식은 위장관 손상이 있거나 고형식과 준고형식을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하루에 6회 이상 제공된다. 상온에서 액체이거나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모든 음식으로 아이스크림, 우유, 곡물죽 등이다.

문41. [정답] ①

환자의 식욕을 촉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환자에게 익숙한 음식을 제공한다.
- ② 식사 전후 구강간호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식욕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
- ③ 드레싱은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인해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식사 전에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④ 음식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보이도록 하여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
- ⑤ 한 번에 많은 양을 제공하기보다는 적은 양씩 자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42. [정답] ①

위산조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코위관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른 중재는 다음과 같다.

- ① 정상적인 위흡인액의 pH는 보통 1~5로 산성이지만, 위산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위산이 억제되어 pH가 5~6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관 위치를 색상, 흡인물의 특성, 삽입 길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위치가 위에 있음이 확인되면 영양액을 주입하며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 작은창자의 흡인액은 pH 6 이상이며, 호흡기 분비액은 pH 7 이상이다.
- ② 위액은 연녹색, 황색, 황갈색 등 다양한 색을 띤다. 장액은 담즙이 섞여 노란색이나 갈색빛 녹색이다. 연녹색 위액을 물에 희석해 다시 주입하면 전해질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액을 희석해 재주입하지 않는다.
- ③ 직전에 주입한 영양액이 흡인될 수 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흡인한 영양액은 다시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하게 폐기하면 체액 및 전해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튜브가 빠져나온 경우, 즉시 다시 밀어 넣지 말고, 위치 확인 후 필요시 재삽입해야 한다. 그대로 밀어 넣으면 기도삽입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다.
- ⑤ 기침은 튜브가 기도에 잘못 삽입되어 발생한 관 위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튜브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며, 영양액을 계속 주입하는 것은 흡인폐렴이나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다.



문43. [정답] ③

제시된 환자의 간호사정 결과, 배뇨 후 잔뇨량이 정상범위(50~100mL 이하) 이상이며 양성전립샘비대, 약해진 소변줄기, 소변을 본 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등의 진단 및 증상으로 효율적인 배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요정체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진단은 비효율적인 배뇨양상과 관련된 요정체이다. 다른 진단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문44. [정답] ⑤

- ① 소변수집주머니에서 일정량을 빼내면 실온에 있던 소변이므로 소변배양이나 소변검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② 방광에 직접 바늘을 삽입하여 채취하는 것은 방광채취로서 유지도뇨관을 통해 채취하면 된다.
- ③ 유지도뇨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자연배뇨를 할 수 없다.
- ④ 유지도뇨관을 제거하고 단순도뇨관을 삽입하여 채취할 필요가 없다.
- ⑤ 검체채취포트 소독 후, 멸균 주사기를 연결하여 채취한다.

문45. [정답] ④

- 여자의 경우, 생리가 끝난 3일 후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 혈뇨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한다.
- 생고기, 가금류, 생선, 가공되지 않은 일부 채소, 비타민C를 섭취하고 대변잠혈검사를 받았을 경우, 양성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 3일 전부터 해당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검사 3~7일 전부터 제한한다.
- 항응고제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는 위장관출혈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대변잠혈검사를 하도록 한다.

문46. [정답] ①

- ① 술은 이뇨성분이 있으므로 피한다.
- ② 커피는 이뇨성분이 있으므로 피한다.
- ③ 변비 환자에게는 충분한 수분과 함께 고섬유식이를 권장한다.
- ④ 카페인이 있는 차는 이뇨성분이 있으므로 피한다.
- ⑤ 하루에 2~3L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문47. [정답] ③

- ① 역류관장: 연동운동을 자극하고 장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② 메살라진관장: 메살라진은 궤양대장염과 크론병 등 염증장질 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염증제(좌약 또는 관장)이다.
- ③ 기름정체관장: 대변에 기름 성분이 흡수되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원활해진다. 용수관장 전 30분 동안 실시할 수 있다.
- ④ 케이엑살레이트관장: 약물치료제를 직장점막으로 흡수시킬 목적인 투약관장 중 혈청 포타슘의 수준이 위험 수준인 환자에게 사용한다.
- ⑤ 네오마이신용액관장: 장수술 전 장내에 있는 박테리아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문48. [정답] ④

- 수동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실시할 때는 운동하는 관절과 가까이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큰 관절에서 작은 관절의 순으로 진행한다.
- 목 수동운동 시, 간호사는 환자의 옆에 서서 굽힘, 펌, 옆굽힘, 돌림 운동을 시행한다.
- 어깨 수동운동은 환자의 옆에 서서 팔꿈치와 손목을 잡아 팔을 편 상태로 어깨를 벌림(외전), 올렸던 팔을 몸 안쪽으로 내리면서 모음(내전)하고 어깨를 원형으로 휘두른다.
- 손가락 수동운동은 한 손은 환자의 손목, 다른 손의 손가락을 환자의 손가락과 깍지를 끼어 손가락 사이를 벌리거나 손등에 대고 간호사의 손으로 구부리고 다시 펴고 젖힌다.
- 무릎 수동운동은 환자의 발목과 무릎을 지지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게 한 후 바깥돌림, 안쪽돌림을 하고 한 손은 무릎 아래에 다른 손은 발목을 지지하여 다리를 듦다.

문49. [정답] ④

환자의 다리가 협조 불가능한 상태이면 환자의 양팔을 침상 위의 삼각손잡이 또는 침상머리 쪽의 난간을 잡게 하거나 팔을 가슴 위에 포개어 놓게 한다.

간호사는 침상머리 쪽을 바라보며 한 발은 약간 앞쪽에 두드려 양발을 벌리고 환자의 중심 맞은편에 서고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린다. 간호사는 침상머리 쪽 팔을 환자의 목과 어깨 아래에 넣어서 면 쪽 어깨를 잡고 다른 팔은 환자의 넓적다리(대퇴) 밑으로 넣는다. 환자에게 목을 구부려서 턱이 가슴 위로 오게 하고 환자와 함께 움직임을 계획한다.

간호사는 뒤쪽 다리에서 앞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올린다. 베개를 제 위치에 놓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도와준다. 침상난간을 올려주고 침상 높이를 조절한다.

문50. [정답] ②

- ① 따뜻한 카페인 없는 허브차(예: 카모마일차)는 가능하지만, 흥차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 ② 이 환자는 커피와 초콜릿을 늦은 저녁에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도 커피를 마신 날 더 뒤척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카페인 제한 교육은 이 사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이다.
- ③ 소량의 단백질 간식(예: 우유, 견과류)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환자의 핵심 문제는 카페인 섭취 습관이므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중재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④ 간호사는 월칙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조정하지 않으며, 약물의 존을 예방하기 위해 비약물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이 환자의 문제는 생활습관(식이)에 기인한 것으로, 약물 중심 접근은 부적절하다.
- ⑤ 초콜릿은 기분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카페인과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성이 있다.

문51. [정답] ③

발열 단계에는 상승기(오한기), 고온기(발열기), 회복기(해열기)의 3단계가 있다.

발열의 상승기(오한기)에는 오한이 사라질 때까지 환자에게 여분의 이불을 덜어주거나 옷을 덧입혀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체온상승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활동을 제한해 안정을 취하게 한다.

①, ②, ④는 고온기(발열기)의 간호활동이다. ⑤는 고온기(발열기)와 회복기(해열기)의 간호활동이다.

문52. [정답] ③

- ① 고비타민, 고칼로리식이를 제공한다.
- ② 근육주사는 순환감소와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맥주사한다.
- ③ 인공눈물을 사용해 각막건조를 줄인다.
- ④ 필요한 경우, 도뇨한다.
- ⑤ 침을 입으로 배출해야 하므로 옆누운자세가 좋다.

문53. [정답] ①

- ① 혈액이 얼굴 부위에 고여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와 어깨에 베개를 받쳐준다.
- ② 사체에 이름표를 붙여야 할 책임이 있다. 옷이나 손목, 발목에도 붙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③ 수건을 말아 턱밑에 받쳐주어 입이 다물어지게 한다.
- ④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힌다.
- ⑤ 의치를 한 경우,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을 위해 일반적으로 의치를 끼운 상태에서 입이 다물어지게 한다.

문54. [정답] ⑤

이 사례에서 환자는 낙상 고위험군(고령, 복합 질환, 기립성 어지럼 등)으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 안전 조정과 간호사의 직접적 중재가 우선이다.

⑤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안전 조치이다. 침대 높이를 낮추는 것은 낙상 시 중상을 예방하고, 간호사가 환자 쪽으로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낙상을 예방한다. 또한 한쪽 난간만 내리는 것은 침대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면서, 반대쪽은 여전히 지지용 보호장치로 남게 하는 방법이다.

①은 중요하지만 환자가 이미 움직이려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②는 과도한 제한으로 자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으며, 침상 내 낙상도 발생할 수 있다.

③은 기립저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는 앓기 전 관찰이 필요하며, 서둘러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④는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동안 환자는 기다리기 어려워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문55. [정답] ②

①, ③, ④, ⑤는 가정 내 올바른 낙상 예방법에 해당한다.

②는 노인의 경우, 주변시야가 좁아져 물체를 잘 보지 못하므로, 계단 벽 쪽에 튀어나와 있는 물체는 없애야 한다.

문56. [정답] ⑤

고위험 기구는 인체의 무균 조직 또는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어떠한 미생물도 존재하면 안 되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기구이다. 수술기구나 심장 및 혈관카테터, 도뇨관, 인체 삽입물, 관절경, 복강경, 이동경자 등이 해당된다.

①, ④는 준위험 기구에 해당된다.

②, ③은 비위험 기구에 해당된다.

문57. [정답] ④

알코올(alcohol)은 탈수를 통해 단백질을 변형시켜 살균작용을 한다. 적정농도는 60~90%이다.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은 70% 농도에서 알코올보다 강한 살균작용이 있다. 다양체내성균(MRSA, VRE), 결핵균, 바이러스, 진균에 효과가 있다. 피부 적용 시 신속한 살균효과가 있지만 잔류효과는 없으며, 주사전 피부소독, 앰플과 바이알 표면의 소독, 손소독제로 사용된다.

단점으로는 피부를 건조시키고, 점막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고무나 플라스틱에 적용 시 물질의 손상이 초래된다. 알코올 적용 시 유기물이 존재하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사전 세척이 필수적이다. 단백물질이 오염된 경우 알코올제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농도가 50% 이하이면 살균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휘발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문58. [정답] ④

접촉주의는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다른 환자나 환경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되는 주의지침이다. 다약제내성균(MRSA, VRE, CRE 등), 오랫동안 환경에서 생존하는 장감염(*Clostridium difficile*, 이질, 로타바이러스 등), 높은 전염력을 지닌 피부감염[고름딱지증(농가진, impetigo), 단순포진, 이감염증, 옴 등]에 적용된다.

- ① 격리병실에서는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이동변기 등을 환자 개인별로 따로 사용하며 재사용 물품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 및 멸균한다.
- ② 환자의 신체나 환자와 근접 접촉한 사물을 접촉하기 전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무균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멸균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다. 병실을 나오기 전 사용한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한다.
- ③ 급성기에는 가능하면 1인실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인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끼리 한 병실에 입원(코호트)한다.
- ④ 격리병실에 상주하는 보호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운을 착용하도록 한다.
- 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병실 밖 이동을 제한하며,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덫가운을 입히거나 깨끗한 시트로 환자를 감싸준다.

문59. [정답] ④

- ① 병에 담긴 용액은 뚜껑을 꼭 닫아 둔다.
- ② 배액병이나 배액주머니를 비울 때는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배액병이나 배액주머니는 별다른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근무조마다 비운다.
- ③ 배액병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배액이 시작되는 부위보다 높게 들지 않는다.
- ④ 병에 담긴 용액은 개봉 후 24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문60. [정답] ④

- ① 이동겸자가 젓으면 겸자의 끝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여 액체가 오염구역에서 멸균영역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② 멸균물품을 덮을 때는 열었던 순서와 반대로 덮도록 한다.
- ③ 멸균영역의 가장자리 2.5cm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멸균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멸균포 위로 손을 뻗지 않는다.
- ⑤ 멸균꾸러미의 포장을 열 때, 가장 윗부분을 면 쪽으로 열어야 남은 덮개 포장으로 잘 덮여 있어 오염을 방지한다.

문61. [정답] ①

설하(혀밑)로 투여되는 약물은 혀밑에 놓여 용해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혀밑의 혈관 속으로 흡수된다. 이런 종류의 약물은 삼켜서는 안 되며, 흔한 예로 nitroglycerin이 있다. 투여 시 약물이 녹을 때까지 혀밑에 두어, 씹거나 삼키거나 액체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문62. [정답] ①

- ① 정확한 약물주입을 위해 피부주름이 5cm 이상인 경우, 90° 각도로 주사바늘을 삽입한다.
- ② 인슐린 주사 부위 순환그림을 보고 주사 부위를 선택한다. 병소나 손상이 없는 부위에 주사하며, 반복 주사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주사 부위를 문지르면 인슐린의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사 부위는 문지르지 않는다.
- ④ 피하주사 조직에는 혈관이 거의 없으므로 주사기 밀대를 당겨 블 필요가 없다.
- ⑤ 피하주사 조직에는 혈관이 거의 없어 출혈의 위험이 거의 없다.

문63. [정답] ①

- ① 지혈대 적용 시간은 최대 60초 이내로 한다. 이를 초과하면 혈액농축과 혈액화학검사 결과 오류를 초래한다.
- ② 환자의 팔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면 중력으로 정맥혈 귀환이 느려지고 정맥이 확장되어 바늘 삽입이 용이하다.
- ③ 주사 부위로 선정된 부위에서 12~15cm 위쪽을 지혈대로 묶는다.
- ④ 바늘은 사면을 위로 하여 피부면과 15~30°로 한 후 정맥내로 삽입한다.
- ⑤ 정맥을 느낄 수 없다면 정맥 말단 부위에서 천자 부위까지 심장 쪽으로 마사지하거나 쓸어주면 정맥이 율혈되어 팽창하는 것을 돋는다. 또한 환자에게 주먹을 오므렸다 펴다 하게 하고, 손가락 끝으로 정맥 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 지혈대를 제거하고 팔 전체에 10~15분간 온찜질을 한다.

문64. [정답] ①

약물이 신체 한 부위에 직접 적용될 때 약물의 국소투약(topical medication)이라 한다. 국소투약은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된다. 국소투여 약물은 보통 특정 부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약물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적용하나 일부는 전신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적용한다. 반응 정도는 조직의 유형과 약물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 ① 환자에게 약물이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구강호흡을 하도록 하고, 콧구멍에서 1cm 위에 점적하여 점적기가 코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한다.

- ② 외이(external ear)는 무균상태는 아닐지라도 고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무균 점적약과 세척액을 사용해야 한다. 멸균되지 않은 용액이 중이(middle ear)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 귀 점적액을 주입하기 전에 고막이 파열되지 않도록 의료담당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상처가 없는 코안 점적 시, 내과적 무균술을 적용한다.
- ④ 광범위하고 상처가 없는 피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로션을 발라 준다. 특히 환자에게 개방상처가 있으면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한다.
- ⑤ 눈 분비물이 있는 경우, 소독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코눈물관의 감염을 예방한다.

문65. [정답] ②

삼출물이 거의 없는 얇은 피부손상에는 보호 목적의 필름 드레싱이 적절하다. 특히 요실금과 같은 습윤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 ① 폼 드레싱은 배액이 필요한 상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정도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하이드로겔 드레싱은 배액이 필요한 상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처 부위에 습기유지와 신경말단을 촉촉하게 함으로써 통증 완화의 효과가 있다.
- ④ 알지네이트 드레싱은 지혈이 필요한 상처나 다량의 삼출물이 있는 상처, 감염된 상처 드레싱에 적합하다.
- 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배액이 필요한 상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 폐쇄 환경을 제공하며 산소가 상처 기저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상처를 저산소증으로 만들어 신생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흡수성 폐쇄 드레싱이다.

3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66~85번) 해설

문66. [정답] ①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제5호〉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문67. [정답] ④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1항 · 제2항제4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문68. [정답] ②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문69. [정답] ①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자부)제7항〉

-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항〉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문70. [정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제6항〉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71. [정답] ④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제1항〉

-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문72. [정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자)제1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 항공기 ·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법」에 따른 약사 ·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 대상 감염병)제2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문73. [정답]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제1항〉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계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제1항〉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문74. [정답] ④

〈검역법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제4항〉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75. [정답] 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검진)제1항~제5항〉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 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문76. [정답]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제1항〉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문77. [정답]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제1항 · 제2항〉

-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겸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문78. [정답] ①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제4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문79. [정답] ③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제1항〉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문80. [정답]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자목〉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문81. [정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1항〉

- ① 시 ·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문82. [정답] ③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제1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시행)〉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제2항〉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문83. [정답]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
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
한다.

문84. [정답] ③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제1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현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
작용을 말한다.

문85. [정답] ④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제2항〉

-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
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
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5회차 3교시

정답 및 해설